

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
일부개정법률안  
(김남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31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4. 14.

발 의 자 : 김남희 · 전진숙 · 장종태  
남인순 · 송옥주 · 복기왕  
정태호 · 박상혁 · 임미애  
임호선 · 김영환 · 양부남  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금지하고, 차별을 당한 피해자는 법원에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.

그런데 차별구제청구소송의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이 패소한 경우 「민사소송법」에 따라 피고 측의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됨. 이는 소송을 제기한 장애인에게 큰 부담을 주고 차별구제를 위한 소송 제기를 위축시켜 장애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이 법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시정하기 위하여 제기된 소송의 경우 「민사소송법」에도 불구하고 소송의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을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평등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48조의2 신설).



##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장에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8조의2(소송비용의 특례) 법원은 「민사소송법」 제98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시정하기 위하여 제기된 소송의 공익성, 소송의 경위와 패소 사유, 소송당사자 간의 관계, 그 밖의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을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소송비용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) 제4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

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<p><u>제48조의2(소송비용의 특례) 법원은 「민사소송법」 제98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시정하기 위하여 제기된 소송의 공익성, 소송의 경위와 패소 사유, 소송당사자 간의 관계, 그 밖의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을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게 할 수 있다.</u></p>